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30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애니멀 호딩 금지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집단 사육하면서도 제대로 된 양육에는 무관심한 채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켜야만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호딩 행위와 상해 또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호딩 행위가 유발하는 동물의 정신적 상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애니멀 호딩¹⁾ 금지

현행법은 최소한의 사육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질병·죽음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²⁾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금지되는 소유자등의 동물학대 내용에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u>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u>

1) Animal Hoarding,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⑤ (생략)	<u>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u> ⑤ (현행과 같음)

최근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 안에서 자신의 보살핌 능력을 넘어서는 수 이상의 강아지, 고양이 등을 집단 사육하면서도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³⁾

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행위로 인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죽음이 유발된 경우에만 동물학대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⁴⁾ 애니멀 호딩 행위와 상해 등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처벌이 어렵고, 애니멀 호딩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동물의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애니멀 호딩이 규제 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3) 한국일보(2022. 2. 3.) 굶주림에 사체 먹던 개와 고양이들... 동물 학대하는 '애니멀 호더' 급증
국민일보(2024. 7. 20.) 반복되는 악몽, 쓰레기 집에서 또 나온 강아지들

4)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이에 개정안은 애니멀 호딩을 동물학대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애니멀 호딩은 동물학대행위라는 인식’을 정립하여 해당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에서 ‘기본적인’, ‘소홀’ 및 ‘심각한 포화·방임’ 등 불확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금지하려는 애니멀 호딩 행위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애니멀 호딩 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인 ‘소유자등’에는 일시적·영구적 보호자도 포함되는바,⁵⁾ 소유자 개인의 애니멀 호딩 행위 금지에 초점을 맞추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동물보호센터 등의 보호기관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유자등의 동물학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 제10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모두에 대하여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⁶⁾ 개정안은 애니멀 호딩 행위의 금지(안 제10조 제4항제4호)와 관련하여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정안만으로는 애니멀 호딩 행위를 금지한다는 선언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음.

5)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방향성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처벌함으로써 애니멀 호딩 행위를 억제할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보살핌 능력을 지원함으로써 애니멀 호딩 행위를 해소해나갈 것인지 등의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포함하여 동물을 복지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법 제10조제4항제2호7)에서 이미 소유자등에게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으므로,⁸⁾ 현행법으로도 애니멀 호딩 행위를 금지할 수 있어 별도의 법률 개정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7

7)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8)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 등